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49,924,790	19,497,744
일반회계	557,893,596	16,736,808
특별회계	92,031,194	2,760,936
공기업특별회계	28,576,110	857,2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543,640	556,30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32,470	300,974
기타특별회계	63,455,084	1,903,65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70,513	65,11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67,904	71,037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280,000	8,40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76,217	38,287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259,034	97,77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0,000	6,000
도시개발특별회계	8,130,000	243,9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45,100	10,353
중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28,875,273	866,258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8,934,000	268,02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76,316	83,289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4,840,727	145,22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99,71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